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장비관리법이 일부개정(2022.11.1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 제외기간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의 명칭을 “표준규격”에서 “기본규격”으로 변경(안 제7조, 제8조, 제10조)
- 소방장비 점검결과 기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안 제36조)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절차 마련(안 제41조)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마련(안 제42조)
- 인증기관 및 소방장비 정비센터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2, 별표4, 별표6)
- 소방장비 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중 기술자 인건비 임금단가 적용기준 개정(안 별표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제정 등)”을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이하 “기본규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표준규격을”을 “기본규격을”로, “표준규격의”를 “기본규격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표준규격을 공고한”을 “기본규격을 공고한”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하고”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센터의 지정절차)”를 “(센터 등의 지정절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로 지정하거나, 사업소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소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 제목 “(센터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부과처분을”을 “행정처분을”로,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을 “행정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4의 제목 중 “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 (제42조 관련)”을 “센터 및 사업소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 (제42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부과처분을”을 “행정처분을”로,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을 “행정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4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가목 중 “센터”를 “센터 또는 사업소”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위반행위란 다목 중 “센터”를 “센터 또는 사업소”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중 “산업부문”을 “기계·설비 부문”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중 “(가목에 따른”을 “(가중처분 적용”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라. 처분권자는 동기·내용 및 횟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제6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소방장비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소방장비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6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6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4조제6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실수·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4조제6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법 제14조제6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4조제6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4조제6항제7호	지정취소		

센터 및 사업소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또는 사업소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36조제3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3항제2호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센터 또는 사업소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36조제3항제3호	시정 명령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업무대행 수수료의 산정기준(제46조 관련)

1. 소방장비의 검사 등의 수수료 산정기준

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준용한다.

나. 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기계·설비 부문의 임금단가를 적용한다.

다. 나목의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1) 소방장비운용자 교육: 고급기술자 1명
- 2) 검사: 중급기술자 1명
- 3) 정밀점검: 중급기술자 2명

라. 표준공량은 검사 등에 걸리는 시간을 하루근무 8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 수수료 산정

가. 소방장비운용자 교육, 검사 및 정밀점검의 각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그 밖의 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1) 직접인건비는 표준공량과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인건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 2)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0%로 한다.
- 3) 그 밖의 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로 한다.
-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출한 비용에서 천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산정한다.

다. 소방장비운용자 교육에 필요한 숙박비 및 식비는 가목의 수수료와 별도로 산정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	법 제48조제1항	200	400	500

반하여 소방장비와 동일한 도장 및 표지를 한 경우				
나.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 반하여 소방장비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100	200	3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소방장비 <u>표준규격</u> 의 제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장비의 <u>표준규격</u> (이하 “ <u>표준규격</u> ”이라 한다)을 제정 ·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제8조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소방장비 <u>기본규격</u> 의 제정 등) ① ----- <u>기본규격</u> (이하 “ <u>기본규격</u> ”-----
② 소방청장은 <u>표준규격</u> 을 제정 ·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u>기본규격</u> -----
③ 소방청장은 <u>표준규격</u> 을 제정 ·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u>표준규격</u> 의 명칭, 번호, 제정 · 개정 · 폐지 연월일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u>기본규격</u> 을 -----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u>표준규격</u> 을 공고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u>표준규격</u> 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다만, 소방산업 기술의 변화 · 발전 등으로 소방	----- <u>기본규격</u> 의 -----
	----- <u>기본규격</u> 을 공고한 -----
	----- <u>기본규격</u> -----

장비의 성능·기능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8조(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소방장비의 표준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1.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생략)

3. 그 밖에 표준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생략)

제10조(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소방장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

----- 기본규격 -----
-----.

⑤ -----
----- 기본규격 -----

-----.

제8조(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기본규격 -

-----.

1. 기본규격-----

2. (현행과 같음)

3. ----- 기본규격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

다)에 따른다.

1. 제품심사기준: 소방장비의 구조·기능·성질·상태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표준규격에 따른 기준

2. (생략)

제36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① (생략)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2. (생략)

③ · ④ (생략)

제41조(센터의 지정절차)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

1. -----

----- 기본규격-----

2. (현행과 같음)

제36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

1.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센터 등의 지정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장비총괄과	
연 락 처	(044) 205 - 7682